광명시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제정 2023. 11. 10 조례 제3033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 보훈·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 및 독립운동 정신을 기르고 광명시 보훈·독립운동사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원칙) ① 광명시 보훈·독립운동사 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광명시 보훈·독립운동사 교육은 학교 교육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다.
-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보훈교육"이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, 예우하는 자세 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.
 - 2. "독립운동사 교육"은 지방 자치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내 고장 역 사를 숙지하고 민족의식 고양과 애향심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.
 - 3. "학교"란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- 제4조(책무)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광명시 보훈·독립운동사 교육 (이하 "교육"이라 한다)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,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교육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 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
 - 2. 제6조에 따른 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
 - 3.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광명시 보훈・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

- 4.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
- 5. 그 밖에 시장이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(사업) 시장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광명시민 보훈·독립운동사 교육
 - 2. 보훈 및 독립운동사 관심 제고를 위한 광명시민 및 학생 체험·봉사 프로그 램 우영
 - 3. 그 밖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7조(위탁) 시장은 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8조(재정지원 등) 시장은 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- 제10조(포상) 시장은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「광명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